제 6 장 감사위원회

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

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
②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

제 46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

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④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47 조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